

2026년 2학기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주요 변경사항

< '26. 8. 26.(수), 학생진로장학부 학생취업장학팀 >

<2026년 2학기 업무처리기준 주요 개정사항(| · || 유형 공통)>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현행화
- ☐ 장학금 수혜누적 기준 명확화
- ☐ 장학금 포기 시 업무 절차 명확화

구분	'26년 1학기	'26년 2학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 현행화	■ 행정정보 및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서 양식 현행화(재단 통합신청 서식과 통일)	■ CI 연계정보 내용 추가 ■ 행정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상 행정정보 현행화 ■ 공공마이데이터 양식 현행화
수혜누적 기준 명확화	■ 장학생 수혜 약정서 상 수혜횟수 누적 기준 명확화	■ 수혜누적 횟수 등 상세 기준은 학자금 중복 지원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며, 의무종사(재직) 미이행에 따른 환수시에도 수혜횟수는 복구되지 않음
장학금 지급 유의사항 명확화	■ 장학금 포기 시 포기확인서 제출 절차 명확화	■ 선발 완료 이후 장학금 포기사 '포기 확인서' 제출 절차 명확화(장학생→대학→재단)

<희망사다리 | 유형 업무처리기준 상세 개정사항>

① 사업개요(변경사항 없음)

② 사업 참여 신청

[변경사항 ②-①] II.사업 참여 신청 - 3. 대학별 인원 배정 - □ 신규장학생 인원 배정 부분

'26년 1학기	'26년 2학기	관련
□ 신규장학생 인원 배정(순차진행) ① 우선 배정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및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 수요 우선 배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추진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및 학석사 연계과정만 해당	□ 신규장학생 인원 배정(순차진행) ① 우선 배정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및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 수요 우선 배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교육부 및 지역별 RISE센터(앵커센터)에서 추진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및 학·석사 연계과정만 해당	p.10

③ 장학생 심사 및 지급

[변경사항 ③-①] III.장학생 심사 및 지급 - 1. 장학생 추천 - (2) 대학별 신규장학생 추천 부분

'26년 1학기	'26년 2학기	관련
- 학생 성적, 학생 취·창업의지, 저소득층 우대 항목은 반드시 포함하되, 배점 및 세부 항목(배점)은 대학이 세분화하여 점수 차등 가능	- 학생 성적, 학생 취·창업의지, 저소득층 우대 항목은 반드시 포함하되, 배점 및 세부 항목(배점)은 대학이 세분화하여 점수 차등 가능 ※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성적심사 제외	p.14

[변경사항 ③-②] III.장학생 심사 및 지급 - 1. 장학생 추천 - (3) 계속장학생 심사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기준> 표 부분

'26년 1학기	'26년 2학기	관련
<신설>	○ 재학 학적이지만, 발생한 등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격상실(지원종료) 처리 * 학점 미이수로 인한 산출할 성적 자체가 없는 경우 포함 - (자격상실(지원종료) 학기) 장학금(등록금, 취·창업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으며, 이미 지원된 경우에는 즉시 반환 필요 - (정상 지원 학기) 졸업 후 의무종사 필요	p.16

[변경사항 ③-③] III.장학생 심사 및 지급 - 4 학생 지급 - □ 장학금 지급 유의 사항 부분

'26년 1학기	'26년 2학기	관련
< 신 설 >	○ (수혜의사 변동) 선발 완료 이후 장학금 포기 희망 시 포기확인서 제출 - (장학생 → 대학) 본인 서명 후 포기확인서 제출 - (대 학 → 재단) 포기확인서 취합하여 공문 제출	p.20

[변경사항 ③-④] III.장학생 심사 및 지급 - 5. 중복지원 금지 부분

'26년 1학기	'26년 2학기	관련
□ (사업의 참여)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참여 등록 ○ 신규 장학생은 장학금 지급 후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일모아시스템)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I 유형) 참여자로 일괄 등록됨(지원금액 포함) ○ 사업의 참여기간은 지원학기 전체 및 의무종사종료일*까지로 함 * 일모아시스템에 최초 기간 등록 시, 종료일은 보증보험기간 만료일로 함 - 보증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해당 학기 보증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등록 - 실제 의무종사를 완료할 경우, 의무종사 종료일로 변경 처리 가능 - 해당 정보는 타 일자리 사업 신청 시 중복지원을 판단하기 위한 심사 자료로 관계기관에서 자유롭게 조회가 가능함 □ (사업의 종료) 장학생은 다음의 경우에 사업 참여 종료처리가 됨 ○ 장학금 전액 반환 및 환수: 중도포기, 자퇴(제적) 등으로 인한 수혜금액 전액 반환승인, 또는 환수 완료 시 참여 시작일을 중도 이탈일로 하여 중도이탈 처리(사업 미참여) ○ 의무종사 완료: 의무종사 종료일자를 중도이탈일로 하여 중도이탈 처리(사업참여 종료)	□ (사업의 참여)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참여 등록 ○ 신규 장학생은 장학금 지급 후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일모아시스템)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I 유형) 참여자로 일괄 등록됨(지원금액 포함) ○ 사업의 참여기간은 지원학기 전체 및 의무종사종료일*까지로 함 * 일모아시스템에 최초 기간 등록 시, 종료일은 보증보험기간 만료일로 함 - 보증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해당 학기 보증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등록 - 실제 의무종사를 완료할 경우, 의무종사 종료일로 변경 처리 가능 ※ 재단 측으로 요청할 경우에만, 사업 참여 종료(중도이탈) 처리 가능하며 자동 처리 불가 - 해당 정보는 타 일자리 사업 신청 시 중복지원을 판단하기 위한 심사 자료로 관계기관에서 자유롭게 조회가 가능함 □ (사업의 종료) 장학생은 다음의 경우에 사업 참여 종료처리가 됨 ○ 장학금 전액 반환 및 환수: 중도포기, 자퇴(제적) 등으로 인한 수혜금액 전액 반환승인, 또는 환수 완료 시 참여 시작일을 중도 이탈일로 하여 중도이탈 처리(사업 미참여) ○ 의무종사 완료: 의무종사 종료일자를 중도이탈일로 하여 중도이탈 처리(사업참여 종료) ※ 재단 측으로 요청할 경우에만, 사업 참여 종료(중도이탈) 처리 가능하며 자동 처리 불가	p.21

< '26년 2학기 업무처리기준 반영사항 상세 부분 >

- (사업의 참여)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참여 등록
- 신규 장학생은 장학금 지급 후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일모아시스템)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I 유형) 참여자로 일괄 등록됨(지원금액 포함)
 - 사업의 참여기간은 지원학기 전체 및 의무종사종료일*까지로 함
- * 일모아시스템에 최초 기간 등록 시, 종료일은 보증보험기간 만료일로 함
- 보증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해당 학기 보증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등록
 - 실제 의무종사를 완료할 경우, 의무종사 종료일로 변경 처리 가능
 - ※ 재단 측으로 요청할 경우에만, 사업 참여 종료(중도이탈) 처리 가능하며 자동 처리 불가
- 해당 정보는 타 일자리 사업 신청 시 중복지원을 판단하기 위한 심사 자료로 관계기관에서 자유롭게 조회가 가능함
- (사업의 종료) 장학생은 다음의 경우에 사업 참여 종료처리가 됨
- 장학금 전액 반환 및 환수: 중도포기, 자퇴(제적) 등으로 인한 수혜금액 전액 반환승인, 또는 환수 완료 시 참여 시작일을 중도 이탈일로 하여 중도이탈 처리(사업 미참여)
 - 의무종사 완료: 의무종사 종료일자를 중도이탈일로 하여 중도이탈 처리(사업참여 종료)
 - ※ 재단 측으로 요청할 경우에만, 사업 참여 종료(중도이탈) 처리 가능하며 자동 처리 불가

④ 장학생 의무사항

[변경사항 4-①] IV.장학생 의무사항 - 1. 의무종사 이행 - (2) 의무종사 인정 - □ 의무종사이행 기준-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생 의무종사이행 기준> 표 부분

'26년 1학기	'26년 2학기	관련
<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준> *의무종사 인정 심사 시점 기준	<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준> ※ 최초 입사 시점의 기업정보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의무종사 인정 심사 시점 기준으로 판단	p.26

[변경사항 4-②] IV.장학생 의무사항 - 1. 의무종사 이행 - (2) 의무종사 인정 - □ 의무종사 인정 서류- < 취업지원형 의무종사 수기 심사 서류> 표 부분

'26년 1학기	'26년 2학기	관련										
< 취업지원형 의무종사 수기 심사 서류 > <table><tr><th>구분</th><th>제출 필요 서류</th></tr><tr><td rowspan="2">재직 확인</td><td>상근근로 ○ 4대 보험 직장 가입 서류 ('24년 이후 졸업자') • 졸업 유예, 수료 포함 - (서류 중 택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재직 확인 가능 ※ '23년 이전 졸업자의 경우 졸업연도 업무처리기준에 근거한 증빙서류 필요</td></tr><tr><td>일용근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일용근로노무제공 내역서 등</td></tr><tr><td>기업 정보 확인</td><td>○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 소규모 개인사업자 사업장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추후 중소기업이 아님이 확인되거나, 의무종사 인정 불가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의무종사 인정 불가 및 심사 결과가 변경 될 수 있음</td></tr><tr><td>가족 기업확인</td><td>○ 본인 명의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td></tr></table>		구분	제출 필요 서류	재직 확인	상근근로 ○ 4대 보험 직장 가입 서류 ('24년 이후 졸업자') • 졸업 유예, 수료 포함 - (서류 중 택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재직 확인 가능 ※ '23년 이전 졸업자의 경우 졸업연도 업무처리기준에 근거한 증빙서류 필요	일용근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일용근로노무제공 내역서 등	기업 정보 확인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 소규모 개인사업자 사업장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추후 중소기업이 아님이 확인되거나, 의무종사 인정 불가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의무종사 인정 불가 및 심사 결과가 변경 될 수 있음	가족 기업확인	○ 본인 명의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구분	제출 필요 서류											
재직 확인	상근근로 ○ 4대 보험 직장 가입 서류 ('24년 이후 졸업자') • 졸업 유예, 수료 포함 - (서류 중 택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재직 확인 가능 ※ '23년 이전 졸업자의 경우 졸업연도 업무처리기준에 근거한 증빙서류 필요											
	일용근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일용근로노무제공 내역서 등											
기업 정보 확인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 소규모 개인사업자 사업장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추후 중소기업이 아님이 확인되거나, 의무종사 인정 불가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의무종사 인정 불가 및 심사 결과가 변경 될 수 있음											
가족 기업확인	○ 본인 명의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취업지원형 의무종사 수기 심사 서류 > <table><tr><th>구분</th><th>제출 필요 서류</th></tr><tr><td rowspan="2">재직 확인</td><td>상근근로 ○ 4대 보험 직장 가입 서류 ('24년 이후 졸업자') • 졸업 유예, 수료 포함 - (서류 중 택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재직 확인 가능 ※ '23년 이전 졸업자의 경우 졸업연도 업무처리기준에 근거한 증빙서류 필요</td></tr><tr><td>일용근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일용근로노무제공 내역서 등</td></tr><tr><td rowspan="2">기업 정보 확인</td><td>○ 사업자등록증 ※ 단,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불가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고용·산재 개인별 부과 고지보험료 조회 내역 서류 등으로 대체 가능</td></tr><tr><td>○ 중소기업확인서 ※ 소규모 개인사업자 사업장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추후 중소기업이 아님이 확인되거나, 의무종사 인정 불가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의무종사 인정 불가 및 심사 결과가 변경 될 수 있음</td></tr><tr><td>가족 기업확인</td><td>○ 본인 명의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td></tr></table>		구분	제출 필요 서류	재직 확인	상근근로 ○ 4대 보험 직장 가입 서류 ('24년 이후 졸업자') • 졸업 유예, 수료 포함 - (서류 중 택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재직 확인 가능 ※ '23년 이전 졸업자의 경우 졸업연도 업무처리기준에 근거한 증빙서류 필요	일용근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일용근로노무제공 내역서 등	기업 정보 확인	○ 사업자등록증 ※ 단,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불가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고용·산재 개인별 부과 고지보험료 조회 내역 서류 등으로 대체 가능	○ 중소기업확인서 ※ 소규모 개인사업자 사업장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추후 중소기업이 아님이 확인되거나, 의무종사 인정 불가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의무종사 인정 불가 및 심사 결과가 변경 될 수 있음	가족 기업확인	○ 본인 명의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p.28
구분	제출 필요 서류											
재직 확인	상근근로 ○ 4대 보험 직장 가입 서류 ('24년 이후 졸업자') • 졸업 유예, 수료 포함 - (서류 중 택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재직 확인 가능 ※ '23년 이전 졸업자의 경우 졸업연도 업무처리기준에 근거한 증빙서류 필요											
	일용근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일용근로노무제공 내역서 등											
기업 정보 확인	○ 사업자등록증 ※ 단,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불가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고용·산재 개인별 부과 고지보험료 조회 내역 서류 등으로 대체 가능											
	○ 중소기업확인서 ※ 소규모 개인사업자 사업장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추후 중소기업이 아님이 확인되거나, 의무종사 인정 불가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의무종사 인정 불가 및 심사 결과가 변경 될 수 있음											
가족 기업확인	○ 본인 명의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26년 2학기 업무처리기준 반영사항 상세 부분 >

< 취업지원형 의무종사 수기 심사 서류 >

구분	제출 필요 서류
재직 확인	○ 4대 보험 직장 가입 서류 ('24년 이후 졸업자') * 졸업 유예, 수료 포함 - (서류 중 택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재직 확인 가능 ※ '23년 이전 졸업자의 경우 졸업연도 업무처리기준에 근거한 증빙서류 필요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고용보험·산재보험 일용근로·노무제공 내역서 등
기업 정보 확인	○ 사업자등록증 ※ 단,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불가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고용·산재 개인별 부과 고지보험료 조회 내역 서류 등으로 대체 가능 ○ 중소기업확인서 ※ 소규모 개인사업자 사업장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추후 중소기업이 아님이 확인되거나, 의무종사 인정 불가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의무종사 인정 불가 및 심사 결과가 변경 될 수 있음
가족 기업확인	○ 본인 명의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변경사항 4-③] IV.장학생 의무사항 - 1.의무중사 이행 - (3) 의무중사 유예 - □ (추가 유예) - < 의무중사 추가유예 신청 사유 및 증빙서류 > 표 부분

'26년 1학기				'26년 2학기				관련
< 의무중사 추가유예 신청 사유 및 증빙서류 >				< 의무중사 추가유예 신청 사유 및 증빙서류 >				p.31
신청사유	증빙서류	회당 최대 인정기간	최대 신청 횟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회당 최대 인정기간	최대 신청 횟수	
질병/상해	① 진단서, ② 치료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진단서 內 진단일 및 치료기간 명시 - 상기 서류 외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입퇴원 확인서 등)	6개월(180일)	4회	질병/상해	① 진단서, ② 치료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진단서 內 진단일 및 치료기간 명시 - 상기 서류 외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입퇴원 확인서 등)	6개월(180일)	4회	
임신	임신 확인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등)	1년(360일)	1회	임신	임신 확인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등)	1년(360일)	1회	
출산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택 1)	1년(360일)	1회	출산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택 1)	1년(360일)	1회	
폐업 (취업 회사 폐업)	폐업 사실 증명서	1년(360일)	1회	폐업 (취업 회사 폐업)	① 폐업 사실 증명서 또는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② 4대 보험 직장 가입서류(폐업 회사 재직내역 확인)	1년(360일)	1회	
군복무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서,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등(택1)	2년(720일)	1회	군복무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서,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등(택1)	2년(720일)	1회	
암진단	① 진단서 ②치료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조직검사 결과지	2년 6개월(900일)	별도심사	암진단	① 진단서 ② 치료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조직검사 결과지	2년 6개월(900일)	별도심사	
중증난치질환	① 진단서 ②치료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소견서	2년 6개월(900일)	별도심사	중증난치질환	① 진단서 ② 치료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소견서	2년 6개월(900일)	별도심사	

< '26년 2학기 업무처리기준 반영사항 상세 부분 > < 의무중사 추가유예 신청 사유 및 증빙서류 >			
신청사유	증빙서류	회당 최대 인정기간	최대 신청 횟수
질병/상해	① 진단서, ② 치료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진단서 內 진단일 및 치료기간 명시 - 상기 서류 외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입퇴원 확인서 등)	6개월(180일)	4회
임신	임신 확인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등)	1년(360일)	1회
출산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택 1)	1년(360일)	1회
폐업 (취업 회사 폐업)	① 폐업 사실 증명서 또는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② 4대 보험 직장 가입서류(폐업 회사 재직내역 확인)	1년(360일)	1회
군복무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서,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등(택1)	2년(720일)	1회
암진단	① 진단서 ②치료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조직검사 결과지	2년 6개월(900일)	별도심사
중증난치질환	① 진단서 ②치료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소견서	2년 6개월(900일)	별도심사

[변경사항 4-④] IV.장학생 의무사항 - 2.직무기초교육 이수 - (3) 직무기초교육 이수 방법 -
□ 이수 결과 확인 - < 직무기초교육 이수 및 증빙 안내 > 표

'26년 1학기			'26년 2학기			관련
행사참여	주관 기관	- 이수기간 내 취창업 박람회, 캠프 등 행사 및 교육 참석 인정 - 발급기관(직인, 발급번호), 본인 참석여부·일자를 확인 가능한 증명서 제출 - 출입증의 경우에도 상기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인정 가능	행사참여	주관 기관	- 이수기간 내 취창업 박람회, 캠프 등 행사 및 교육 참석 인정 ※ 특강(교육)의 경우 8시간 이수 및 오프라인 참여만 인정 가능 - 발급기관(직인, 발급번호), 본인 참석여부·일자를 확인 가능한 증명서 제출 - 출입증의 경우에도 상기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인정 가능	p.36
봉사활동	VMS, 1365	- 이수기간 내 봉사활동이 누적 8시간 이상인 경우만 인정 - 인증기관(VMS 등)에서 인증받지 못한 증빙자료는 불인정	봉사활동	VMS, 1365	- 이수기간 내 봉사활동이 누적 8시간 이상인 경우만 인정 - 인증기관(VMS 등)에서 인증받지 못한 증빙자료는 불인정	
이력서 컨설팅	컨설팅 기관	①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매칭 프로그램' 참여 - [경로] 기업인력애로센터 일자리매칭플랫폼 - 사업소개 - 취업매칭 서비스 ※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매칭서비스는 별도 수수료인증 발급 가능 ② 이수기간 내 i-ONEJOB 등을 통해 이력서 컨설팅 진행 【i-ONE JOB 이력서 컨설팅 이용 경로】 • 아이원잡(www.ibkonejob.co.kr) → 로그인 → 취업지원 → 취업컨설팅 → 이력서 컨설팅 → 이력서 등록 후 컨설팅 진행 ③ 컨설팅 기관(전문가) 및 첨삭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제출 - 본인이 작성한 이력서에 대한 첨삭만 인정(자료 상단 이름 기재) - 첨삭 내역이 없거나 첨삭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받은 이력서는 인정 불가	이력서 컨설팅	컨설팅 기관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취업매칭 프로그램' 참여 - [경로] 기업인력애로센터 일자리매칭플랫폼 - 사업소개 - 취업매칭 서비스 ※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매칭서비스는 별도 수수료인증 발급 가능 ② 이수기간 내 i-ONEJOB, 알앤디잡을 통해 이력서 컨설팅 진행 【i-ONE JOB 이력서 컨설팅 이용 경로】 【R&D JOB 이력서 컨설팅 이용 경로】 • 아이원잡(www.ibkonejob.co.kr) • 알앤디잡(www.rndjob.or.kr) ③ 컨설팅 기관(전문가) 및 첨삭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제출 - 본인이 작성한 이력서에 대한 첨삭만 인정(자료 상단 이름 기재) - 첨삭 내역이 없거나 첨삭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받은 이력서는 인정 불가	

< '26년 2학기 업무처리기준 반영사항 상세 부분 >

< 직무기초교육 이수 및 증빙 안내 >

이수유형	인증처	이수 방법 및 증빙자료							
(직업심리검사, 자격증 취득, 자기계발 강의수강 부분은 변경내역 없으므로 생략)									
행사참여	주관 기관	▶ 이수기간 내 취·창업 박람회, 캠프 등 행사 및 교육 참석 인정 ※ 특강(교육)의 경우 8시간 이수 및 오프라인 참여만 인정 가능 ▶ 발급기관(직인, 발급번호), 본인 참석여부·일자를 확인 가능한 증명서 제출 - 출입증의 경우에도 상기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인정 가능							
봉사활동	VMS, 1365	▶ 이수기간 내 봉사활동이 누적 8시간 이상인 경우만 인정 ▶ 인증기관(VMS 등)에서 인증받지 못한 증빙자료는 불인정							
이력서 컨설팅	컨설팅 기관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취업매칭 프로그램’ 참여 - [경로] 기업인력애로센터 일자리매칭플랫폼 – 사업소개 – 취업매칭 서비스 ※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매칭서비스는 별도 수수료확인증 발급 가능 ② 이수기간 내 i-ONEJOB, 등 R&D JOB을 통해 이력서 컨설팅 진행 <table><tr><td>IBK기업은행</td><td>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td></tr><tr><td>【 i-ONE JOB 이력서 컨설팅 이용 경로 】</td><td>【 R&D JOB 이력서 컨설팅 이용 경로 】</td></tr><tr><td>• 아이원잡(www.ibkonejob.co.kr)</td><td>• 알앤디잡(www.rndjob.or.kr)</td></tr></table> ③ 컨설팅 기관(전문가) 및 첨삭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제출 - 본인이 작성한 이력서에 대한 첨삭만 인정(자료 상단 이름 기재) - 첨삭 내역이 없거나 첨삭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받은 이력서는 인정 불가		IBK기업은행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i-ONE JOB 이력서 컨설팅 이용 경로 】	【 R&D JOB 이력서 컨설팅 이용 경로 】	• 아이원잡(www.ibkonejob.co.kr)	• 알앤디잡(www.rndjob.or.kr)
IBK기업은행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i-ONE JOB 이력서 컨설팅 이용 경로 】	【 R&D JOB 이력서 컨설팅 이용 경로 】								
• 아이원잡(www.ibkonejob.co.kr)	• 알앤디잡(www.rndjob.or.kr)								
OJT 등 사내교육	소속 회사	▶ 사내교육 8시간 이상 교육이수 필요 (OJT 등) ▶ 소속회사의 직인이 포함된 교육이수 증빙자료 1부 ▶ 4대 보험 가입증명 서류 1부 中 택1 제출 ※ 법정 의무교육은 해당되지 않음							

⑤ 장학금 반환 및 환수(변경사항 없음)

⑥ 불입문서(취창업 협약서 등) ① ~ ⑫ 부분

[변경사항 ⑥-①] 장학금 수혜 약정서(취업 및 창업 협약서) 부분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I 유형) 수혜 약정서(취업 및 창업 협약서)>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I 유형) 장학생의 의무에 관한 사항>

'26년 1학기	'26년 2학기	관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유형) 수혜 약정서(취업 및 창업 협약서)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생으로서 아래 사항들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 1. 본인은「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이하"훈령"),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해당학기 업무처리기준", "환수규정"에 근거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고 있으며,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재단이 인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창업을 유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유형) 수혜 약정서(취업 및 창업 협약서)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I 유형) 장학생으로서 아래 사항들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 1. 본인은「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이하"훈령"),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I 유형) "해당학기 업무처리기준", "환수규정"에 근거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고 있으며,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재단이 인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창업을 유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p.50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유형) 장학생의 의무에 관한 사항 제1조(장학생 준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사업을 통해 선정된 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유형) 장학생의 의무에 관한 사항 제1조(장학생 준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I 유형) 사업을 통해 선정된 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p.51
제2조(장학금 지급)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은 등록금 전액 지원이 원칙이며, 장학생이 타 장학금 수혜 등을 이유로 임의로 차액지급(등록금액-타 장학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규장학생 선발 전 기수혜한 장학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차액지급(등록금액-타 장학금)이 가능합니다.	제2조(장학금 지급)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은 등록금 전액 지원이 원칙이며, 장학생이 타 장학금 수혜 등을 이유로 임의로 차액지급(등록금액-타 장학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규장학생 선발 전 기수혜한 장학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차액지급(등록금액-타 장학금)이 가능합니다. <수혜누적 횟수 기준 추가> ※ 수혜누적 횟수 등 상세 기준은 학자금 중복지원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며, 의무종사 미이행에 따른 환수시에도 수혜횟수는 복구되지 않음	p.53

< '26년 2학기 업무처리기준 반영사항 상세 부분 >

제2조(장학금 지급)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은 등록금 전액 지원이 원칙이며, 장학생이 타 장학금 수혜 등을 이유로 임의로 차액지급(등록금액-타 장학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규장학생 선발 전 기수혜한 장학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차액지급(등록금액-타 장학금)이 가능합니다.

1. 장학생의 선발과 지급은 선발학기 소속학과 학년제별로 그 수혜횟수가 제한됨

수혜횟수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일반대(최대)**	-	-	4회(8회)	6회(10회)	8회(12회)
전문대(최대)**	2회(4회)	4회(6회)	6회(8회)	8회(10회)	10회(12회)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3년제로 운영되나, 1학년만 지원함에 따라 최대 2회로 산정함

** (최대)는 재단 장학금 개인별 최대 지원횟수이며 이전 학교에서의 재단 장학금 수혜실적을 포함하여 누적 관리

※ 글로벌 대학(다중학사제)의 학사과정은 일반대, 전문학사과정은 전문대 기준 적용

※ 수혜누적 횟수 등 상세 기준은 학자금 중복지원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며, 의무종사 미이행에 따른 환수시에도 수혜 횟수는 복구되지 않음

< 참고. '26년 2학기 학자금 중복지원 업무처리기준 상 신청인 동의서>

다. 반환 동의

본인은 재단으로부터 수혜한 학자금지원금의 반환의무 발생 시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반환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학기 개시 후 학적변동이 발생하여 기 수혜한 장학금에 대해 반환의무가 발생한 경우, 재단의 정책에 따라 장학금 수혜횟수 누적*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함을 동의합니다.

*「수혜횟수 누적」

- 반환사유 발생 후 1개월 내에 미반환 시 대학이 처리(미반환 또는 부분반환)하고 수혜횟수 누적됨
- 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 반환 시 수혜횟수가 누적됨(전액 반환 시 수혜횟수 미누적)

- 6-②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변경사항 없음)
- 6-③ 장학금 포기확인서(변경사항 없음)
- 6-④ 지원유형별 의무종사 제외 업종(변경사항 없음)
- 6-⑤ 2026년 중앙부처 일자리 사업 현황(변경사항 없음)
- 6-⑥ 표준 근로계약서(고용노동부 공표)(변경사항 없음)
- 6-⑦ 지급신용보험 가입 법정대리인 동의서(변경사항 없음)
- 6-⑧ OJT 등 사내교육 이수확인서(변경사항 없음)

[변경사항 6-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부분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26년 1학기	'26년 2학기	관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희망사다리 I 유형 운영업무> 개인정보 항목 - [인적사항] 성명,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 (휴대폰번호·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집 주소, 우편주소), 계좌번호, 고객번호, 가족관계정보, 보호자정보, 사망정보 등 <희망사다리 I 유형 사후관리> 개인정보 항목 - [직무기초교육] 직무기초교육 이수보고서, 직무기초교육 이수(면제) 증빙서류 등* * 이력서 컨설팅 증적, 취창업 행사 참여확인서, 자기계발 수료증, 자격증, 봉사활동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사내교육 이수 증빙서류, 네트워크 창업 활동보고서, 4대보험 가입기간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창업경진대회 수상 실적, 지적재산권 취득 증빙서류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희망사다리 I 유형 운영업무> 개인정보 항목 - [인적사항] 성명,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 (휴대폰번호·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집 주소, 우편주소), 계좌번호, 고객번호, 가족관계정보, 보호자정보, 사망정보,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 등 <희망사다리 I 유형 사후관리> 개인정보 항목 - [직무기초교육] 직무기초교육 이수보고서, 직무기초교육 이수(면제) 증빙서류 등* * 이력서 컨설팅 증적, 취창업 행사 참여확인서, 자기계발 수료증, 자격증, 봉사활동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사내교육 이수 증빙서류, 네트워크 창업 활동보고서, 4대보험 가입기간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창업경진대회 수상 실적, 지적재산권 취득 증빙서류,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 등	p.77		
< 신 설 >	▶ 행정정보에 관한 수집·이용 동의 여부(필수) <table><tr><td>수집·이용 동의 여부</td><td>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td></tr></table>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p.80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에 관한 수집·이용 동의 여부(필수)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26년 1학기	'26년 2학기	관련
▶ 개인정보 제3자 조회 내역(필수) 제공받는 기관 고용노동부	▶ 개인정보 제3자 조회 내역(필수) 제공받는 기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등)	p.81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필수)

조회하는 기관	조회목적	조회항목	보유·이용기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	의무종사 심사	고용정보(조회를 위한 제공 항목 : 주민등록번호, 고객번호, 성명, 학적정보, 휴대전화번호) 등	30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참여대학	장학금 심사, 지급	e-MU(군전문학사) 학과의 군 장학생 여부 등	30년
	반환(환수) 등 사후관리	학적정보(졸업, 자퇴, 제적 등), 학적 변동일자 등	30년
한국고용정보원·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직무기초교육 이수 여부 확인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집주소, 교육명 및 취창업활동 동명, 교육 및 취창업활동 이수 여부, 이수 일자 등	30년
신용정보회사 (NICE기업정보 등)	의무종사 심사 관련 기업정보 확인	기업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기업분류(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업종·업태, 매출액 등	30년

※ 위의 개인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장학금 신청, 지급 및 사후관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3.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3.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일부 행정정보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인의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포함)을 위한 매학기 신청, 변동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처리 및 학자금지원 사후관리 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행정정보: 주민등록등(초)본(개명이력, 주소이력, 주민등록번호정정·변경이력 등), 가족관계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정보 등),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 국내거소사실증명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국민연금수급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해외이주신고증명서,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 일반·집합건축물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건축물, 집합건물), 토지(임야)대장,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소득금액증명, 휴·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출입국정보, 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근로자개인별월평균보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건설기계등록원부(갑), 화재증명원,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등

■ 행정정보 이용의 목적 및 이용범위:

-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장학금 환수 등 사후관리,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 장학재단법 제50조의4(자료 요구 및 질문)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 이용기관의 명칭: 한국장학재단

행정정보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4.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에 관한 사항(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4.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에 관한 사항*(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공공 마이데이터)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정보주체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공요구권)에 근거하여 행정기관 등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려는 자에게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정보주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자에게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보주체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제도 이용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제공요구서'와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작성만으로 서류제출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일부 행정정보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은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정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 및 제공 요구가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가.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 이용목적	▶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통한 공공 마이데이터의 조회·수집·이용
보유 · 이용기간	▶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 · 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장학금 사후관리 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학자금지원 서비스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 서류를 귀하가 직접 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집·이용 항목]

 고유식별정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에 따라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 정보 활용 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 일반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CI값* * CI(Connecting Information)값: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에서 부여하는 개인 식별전산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나. 제공 (재단의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 데이터 보유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 본인확인기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근거한 본인확인기관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통한 공공 마이데이터의 조화·제공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연계정보(CI값)의 생성·조화·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장학금 사후관리 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학자금지원 서비스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 서류를 귀하가 직접 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에 따라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 정보 활용 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CI값*
L 일반개인정보	* CI(Connecting Information)값: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에서 부여하는 개인 식별전산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다.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제공 받는 것에 관한 사항)

본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제공받는 자	▶ 한국장학재단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학자금 지원 서비스를 위한 공공마이데이터 수집·이용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장학금 사후관리 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학자금지원 서비스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 서류를 귀하가 직접 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 정보주체에 관한 사항

- 성명 : (입력 신청 정보 자동 연계)
- 생년월일 : (입력 신청 정보 자동 연계)
- 연락처 : (입력 신청 정보 자동 연계)

■ 본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사항

- 이용기관 : 한국장학재단
- 묶음정보 서비스명 : 학자금 지원 서비스
- 묶음정보 이용목적 : 학자금 지원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본인정보 제공
- 제공 요청 유형 : 일회성 제공
-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 10년
- 정기적 제공 요청 상세내용
 - 주기 : 해당 없음
 - 종료시점 : 해당 없음

▶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요구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제공하신 본인정보는 제공요구 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종료일(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까지 본인정보 제공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장학금 사후관리 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단과 거래 중인 모든 학자금대출 전액 상환 및 서비스(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

■ 본인정보에 관한 사항

 고유식별정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6항에 따라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 정보 활용 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CI값*		
↳ 일반개인정보	* CI(Connecting Information)값: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에서 부여하는 개인 식별전산정보		
↳ 공공정보	▶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보유기관 (보유기관명)	본인정보 명칭 (필요 행정정보명)	상세항목(항목값)
	국민건강보험 공단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가입자_세대주정보) 성명, 주민_관리번호 (보험급여자정보) 성명, 주민_관리번호, 급여개시유효일
	국민건강보험 공단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발급항목) 발급일자 (발급항목) 발급기관장 (확인청구자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_전체 (자격득실확인정보) 가입자구분, 사업자명칭,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명	(과세유형) 과세유형 (납세자정보)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발급, 사업장소재지 (개업일자) 개업일자 (사업자등록일자) 사업자등록일자 (업태) 업태

			(종목) 종목 (발급일자) 년, 월, 일 (공동사업자-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발급 (사업자상태 코드) 사업자상태 코드 (사업자상태) 사업자상태 (증명내용 업태종목내역) 업태, 종목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가입 자가입증명	(가입자명) 가입자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정보 (사업장명칭) 사업장명칭 (최종취득일자) 최종취득일자 (최종상실일자) 최종상실일자 (발급일자) 발급일자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 및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 요구합니다. (예)(제공 요구합니다) ☐ 아니오(제공 요구하지 않습니다) ☐ 본인 행정정보 보유기관 귀하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여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재단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시겠습니까? ☐ 요구함 ☐ 요구하지 않음		
※ 본 동의 이후 동일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기관 및 데이터 보유 정부·공공기관의 이용제한 또는 전산장애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 유의사항: 정보주체가 위 사항에 대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정보 제공 목적에 따른 처리를 위해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⑥-⑩ 중소기업 확인서류 견본(변경사항 없음)

⑥-⑪ 중견기업 확인서류 견본(변경사항 없음)

[변경사항 6-⑫] 중소·중견기업 및 창업, 일자리 사업 관련 법조문(법 시행일자 최신화)

'26년 1학기	'26년 2학기	관련
[중소기업기본법(시행 2024. 8. 28.)] 동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중소기업기본법(시행 2026. 7. 1.)] 동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p.89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5. 10. 1.) 동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좌동	p.90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 2025. 10. 1.) 동법 시행령 (시행 2026. 2.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 2026. 7. 1.) 동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p.93

< '26년 2학기 업무처리기준 반영사항 상세 부분 >

[중소기업기본법(시행 2026. 7. 1.)]

※ 법 제2조 내용 변경사항 없으며, 법령 시행일자만 변경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20>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26년 2학기 업무처리기준 반영사항 상세 부분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 2026. 7. 1.)

※ 법 제5조 내용 변경사항 없으며, 법령 시행일자만 변경

제5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 2. 27., 2025. 3. 11.>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12. 23.>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

- 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5. 12. 23.>
-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10. 1., 2025. 12. 23.>
-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2. 23.>

<희망사다리 || 유형 업무처리기준 상세 개정사항>

① 사업 개요

[변경사항 ①-①] I.사업개요 - 2. 지원대상 - (1) 고등학교 졸업자 - □ 재작간 산정 기준 부분

'26년 1학기	'26년 2학기	관련
국내 법인의 재직 경력만 인정되고, 외국 법인 또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재직경력인 불인정	국내 법인의 재직 경력만 인정되고, 외국 법인 또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재직경력은 불인정	p.2

[변경사항 ①-②] I.사업개요 - 3. 지원 내용 - □ 지원금액 부분

'26년 1학기	'26년 2학기	관련												
□ 지원금액 :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현 재직기업 유형별 차등 지원 - 중소, 중견기업 : 등록금 전액 - 대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 : 등록금의 50%	□ 지원금액 :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현 재직기업 유형별 차등 지원 - 중소, 중견기업 : 등록금 전액 - 대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 비영리기관 : 등록금의 50%	p.4												
<table border="1"> <tr> <th>기업유형</th><th>중소·중견기업</th><th>대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th></tr> <tr> <th>지원금액</th><td>등록금(필수경비) 전액</td><td>등록금(필수경비) 50%</td></tr> </table>	기업유형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	지원금액	등록금(필수경비) 전액	등록금(필수경비) 50%	<table border="1"> <tr> <th>기업유형</th><th>중소·중견기업</th><th>대기업, 비영리기관</th></tr> <tr> <th>지원금액</th><td>등록금(필수경비) 전액</td><td>등록금(필수경비) 50%</td></tr> </table>	기업유형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	지원금액	등록금(필수경비) 전액	등록금(필수경비) 50%	
기업유형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												
지원금액	등록금(필수경비) 전액	등록금(필수경비) 50%												
기업유형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												
지원금액	등록금(필수경비) 전액	등록금(필수경비) 50%												

② 장학금 신청

[변경사항 ②-①] II.장학금 신청 - 2. 학생 신청 - ③ 장학금 신청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청 증빙 서류 > 표 부분

'26년 1학기	'26년 2학기	관련																								
<table><tr><th>구분</th><th>제출 서류</th></tr><tr><td>고등학교 졸업 여부</td><td> * 직업제고 : 졸업증명서 * 일반제고 전문교육 위탁과정 : 수료증 - 수료증으로 위탁과정 수료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졸업 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추가 제출 </td></tr><tr><td>출산 여부 (35세 이상만 제출)</td><td>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으로 분류되어 연청 배정 만점) </td></tr><tr><td>전문학사 취득자 대학진학</td><td> * 전문학사 학위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졸업증명서 등) </td></tr><tr><td>가족기업 재직 여부</td><td> * 본인 명의의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문 인정 불가) </td></tr><tr><td>영업 활동 증명 (거기인사없지만 해당)</td><td> * 매출액 및 거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규 신청 시만 해당) </td></tr></table>	구분	제출 서류	고등학교 졸업 여부	* 직업제고 : 졸업증명서 * 일반제고 전문교육 위탁과정 : 수료증 - 수료증으로 위탁과정 수료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졸업 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추가 제출	출산 여부 (35세 이상만 제출)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으로 분류되어 연청 배정 만점)	전문학사 취득자 대학진학	* 전문학사 학위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졸업증명서 등)	가족기업 재직 여부	* 본인 명의의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문 인정 불가)	영업 활동 증명 (거기인사없지만 해당)	* 매출액 및 거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규 신청 시만 해당)	<table><tr><th>구분</th><th>제출 서류</th></tr><tr><td>고등학교 졸업 여부</td><td> * 직업제고 : 졸업증명서 * 일반제고 전문교육 위탁과정 : 수료증 - 수료증으로 위탁과정 수료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졸업 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추가 제출 </td></tr><tr><td>출산 여부 (35세 이상만 제출)</td><td>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으로 분류되어 연청 배정 만점) </td></tr><tr><td>전문학사 취득자 대학진학</td><td> * 전문학사 학위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졸업증명서 등) </td></tr><tr><td>가족기업 재직 여부</td><td> * 본인 명의의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문 인정 불가) </td></tr><tr><td>영업 활동 증명 (거기인사없지만 해당)</td><td> * 매출액 및 거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규 신청 시만 해당) </td></tr></table>	구분	제출 서류	고등학교 졸업 여부	* 직업제고 : 졸업증명서 * 일반제고 전문교육 위탁과정 : 수료증 - 수료증으로 위탁과정 수료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졸업 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추가 제출	출산 여부 (35세 이상만 제출)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으로 분류되어 연청 배정 만점)	전문학사 취득자 대학진학	* 전문학사 학위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졸업증명서 등)	가족기업 재직 여부	* 본인 명의의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문 인정 불가)	영업 활동 증명 (거기인사없지만 해당)	* 매출액 및 거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규 신청 시만 해당)	p.9
구분	제출 서류																									
고등학교 졸업 여부	* 직업제고 : 졸업증명서 * 일반제고 전문교육 위탁과정 : 수료증 - 수료증으로 위탁과정 수료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졸업 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추가 제출																									
출산 여부 (35세 이상만 제출)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으로 분류되어 연청 배정 만점)																									
전문학사 취득자 대학진학	* 전문학사 학위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졸업증명서 등)																									
가족기업 재직 여부	* 본인 명의의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문 인정 불가)																									
영업 활동 증명 (거기인사없지만 해당)	* 매출액 및 거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규 신청 시만 해당)																									
구분	제출 서류																									
고등학교 졸업 여부	* 직업제고 : 졸업증명서 * 일반제고 전문교육 위탁과정 : 수료증 - 수료증으로 위탁과정 수료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졸업 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추가 제출																									
출산 여부 (35세 이상만 제출)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으로 분류되어 연청 배정 만점)																									
전문학사 취득자 대학진학	* 전문학사 학위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졸업증명서 등)																									
가족기업 재직 여부	* 본인 명의의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문 인정 불가)																									
영업 활동 증명 (거기인사없지만 해당)	* 매출액 및 거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규 신청 시만 해당)																									

< '26년 2학기 업무처리기준 반영사항 상세 부분 >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청 증빙 서류 >

- (1학기) 심사년도 1월 1일 이후 발급서류
- (2학기) 심사년도 7월 1일 이후 발급서류

구분	제출 서류
고등학교 졸업유형	▶ 직업계고 : 졸업증명서 ▶ 일반계고 전문교육 위탁과정 : 수료증 - 수료증으로 위탁과정 수료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추가 제출
출산 여부 (35세 이상만 제출)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으로 분류되어 연령 배점 만점)
전문학사 취득자 대학진학	▶ 전문학사 학위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졸업증명서 등)
가족기업 재직 여부	▶ 본인 명의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정 불가)
영업 활동 증빙 ※개인사업자만 해당	▶ 매출액 및 거래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신규 신청 시만 해당)

※ 기준 외 서류 제출 시 심사결과는 재단의 판단에 따름

③ 심사 및 장학금 지급

[변경사항 ③-①] III.장학생 심사 및 지급 - 3. 장학금 지급 - □ 장학금 지급 유의 사항 부분

'26년 1학기	'26년 2학기	관련
< 신 설 >	○ (수혜의사 변동) 선발 완료 이후 장학금 포기 희망 시 포기확인서 제출 - (장학생 → 대학) 본인 서명 후 포기확인서 제출 - (대 학 → 재단) 포기확인서 취합하여 공문 제출	p.23

④ 장학생 의무사항

[변경사항 ④-①] IV.장학생 의무사항 - 3. 의무재직 이행 - (2) 의무재직 인정 - □ 의무재직 이행 심사 및 재직기간 산정 부분

'26년 1학기	'26년 2학기	관련
□ 의무재직 이행 심사 및 재직기간 산정 ○ 의무재직 상시 보고 시, 가족기업 여부 확인을 위한 가족 정보(이름, 생년월일) 필수 입력 ○ 고용보험 DB를 기준으로 일단위로 산정하며, 추가인정이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함	□ 의무재직 이행 심사 및 재직기간 산정 ○ 의무재직 상시 보고 시, 가족기업 여부 확인을 위한 가족 정보(이름, 생년월일) 필수 입력 ○ 재직기간은 고용보험 DB를 기준으로 일단위로 산정하며, 미확인자에 대하여는 재단 홈페이지 의무재직 상시보고를 통해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재직기간을 산정함	p.28

< '26년 2학기 업무처리기준 반영사항 상세 부분 >

【인정 증빙서류】

▶ **개인사업자 대표(1~2 중 택1 제출)**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폐업사실증명원

※ 개업일~발급일(폐업일) 사이에 의무재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재직 인정

▶ **법인사업자 대표/근로자(1, 2 모두 제출)**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4대보험 가입기간 증빙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재직 여부를 확인하며, 4대 보험 미가입자(프리랜서, 사업소득 등)는 재직 미인정

※ 단,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불가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으로 신청 가능

⑤ 장학금 반환 및 환수

[변경사항 ⑤-①] V.장학금 반환 및 환수 - (5)기타 <모니터링 관련 내용 위치 이동>

'26년 1학기	'26년 2학기	관련
IV.장학생 의무사항 - 3. 의무재직 이행 - (3) 의무재직 유예 -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현장 모니터링 점검사항 >	V.장학금 반환 및 환수 - 1. 장학금 반환 - (5) 기타 -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현장 모니터링 점검사항 >	p.29 → p.32

< '26년 2학기 업무처리기준 반영사항 상세 부분 >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현장 모니터링 점검사항 >

- ① 장학생 선발 점검 : 재단 전산시스템에 기입력한 성적정보 및 학적 정보 일치 여부 확인
 - ② 학적 변동 후속 조치 점검 : 자퇴.제적.휴학자 명단 대조, 장학생 학적 변동 시 공문 발송 여부, 장학금 반환처리 여부 확인
 - ③ 장학금 지급 결과 점검 : 재단 지급액.대학 집행액 일치 여부, 학생 명의의 계좌로 장학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대학이 관리하는 장학금 통장에 표시되는 내용의 적합성 여부, 지출 근거 서류 보관 상태 확인
- 현장모니터링 결과 장학금 지원 부적격자 또는 지원금액 부당 사용이 확인된 경우, 해당 장학금은 환수조치하고 해당 대학은 향후 실태점검 대상 대학으로 지속적 감독 실시

[변경사항 ⑤-②] V. 장학금 반환 및 환수 - 2. 장학금 환수 부분

'26년 1학기	'26년 2학기	관련
① 재단 직접 환수 ○ 환수대상 : 장학금 환수(반환) 사유 발생자 ※ 단, 보증보험에 가입되었고 보험청구일이 보험사고일(장학금 환수사유 발생일) 이후 3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보험 청구를 통해 환수 진행	① 재단 직접 환수 ○ 환수대상 : 장학금 환수(반환) 사유 발생자 ※ 단, 보증보험에 가입되었고 보험청구일이 보험사고일(장학금 환수사유 발생일) 이후 3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보험 청구를 통해 환수 진행	<기준> p.34
② 보증보험 청구를 통한 환수(2023년 1학기 이전 선발자(보험가입자))	② 보증보험 청구를 통한 환수(2023년 1학기 이전 선발자(보험가입자)) <해당 내용 전체 삭제>	<기준> p.35

< '26년 2학기 업무처리기준 반영사항 상세 부분 >

② 보증보험 청구를 통한 환수(2023년 1학기 이전 선발자(보험가입자))

<표 삭제>

○ 보험금 청구 대상자(A) : 보증보험에 가입되었고 보험청구일이 보험사고일(장학금 환수사유 발생일)이후 3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 보증보험사에 대위변제를 청구하여 채권 회수 가능

※ 보험(대위변제) 청구 이후에는 재단을 통한 장학금 반환 불가

○ 청구 불가자(B) : 보증보험을 가입하였으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재단에서 직접 환수 진행

【 대위변제 청구 시 준비서류(보험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 ① 보험금 청구서(보험사 제공), ② 법인인감증명서(재단)
- ③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재단), ④ 청구대상자 장학금 수혜정보 및 연도별 수혜약정서
- ⑤ 청구대상자 수혜학기별 보험증권번호, ⑥ 청구대상자 손해입증자료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지급보증 신용보험제도>

(정의), (효과), (관리) 부분

⑥ 불입문서(수혜 약정서 등) ① ~ ⑨ 부분

[변경사항 ⑥-①] 장학금 수혜 약정서 부분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 유형) 수혜 약정서>

'26년 1학기	'26년 2학기	관련
제2조(장학금 지급 등) ①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은 등록금 전액 지원이 원칙이며, 장학생이 타 장학금 수혜 등을 이유로 임의로 차액지급(등록금액-타 장학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규장학생 선발 전 기수혜한 장학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차액지급(등록금액-타 장학금)이 가능합니다. ② ~ ③ 생략	제2조(장학금 지급 등) ①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은 등록금 전액 지원이 원칙이며, 장학생이 타 장학금 수혜 등을 이유로 임의로 차액지급(등록금액-타 장학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규장학생 선발 전 기수혜한 장학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차액지급(등록금액-타 장학금)이 가능합니다. <수혜누적 횟수 기준 추가> ※ 수혜누적 횟수 등 상세 기준은 학자금 중복지원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며, 의무재직 미이행에 따른 환수시에도 수혜횟수는 복구되지 않음 ② ~ ③ 생략	p.38

< '26년 2학기 업무처리기준 반영사항 상세 부분 >

제2조(장학금 지급 등) ①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은 등록금 전액 지원이 원칙이며, 장학생이 타 장학금 수혜 등을 이유로 임의로 차액지급(등록금액-타 장학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규장학생 선발 전 기수혜한 장학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차액지급(등록금액-타 장학금)이 가능합니다.

※ 수혜누적 횟수 등 상세 기준은 학자금 중복지원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며, 의무재직 미이행에 따른 환수시에도 수혜횟수는 복구되지 않음

< 참고. '26년 2학기 학자금 중복지원 업무처리기준 상 신청인 동의서>

다. 반환 동의

본인은 재단으로부터 수혜한 학자금지원금의 반환의무 발생 시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반환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학기 개시 후 학적변동이 발생하여 기 수혜한 장학금에 대해 반환의무가 발생한 경우, 재단의 정책에 따라 장학금 수혜횟수 누적*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함을 동의합니다.

*「수혜횟수 누적」

- 반환사유 발생 후 1개월 내에 미반환 시 대학이 처리(미반환 또는 부분반환)하고 수혜횟수 누적됨
- 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 반환 시 수혜횟수가 누적됨(전액 반환 시 수혜횟수 미누적)

[변경사항 6-②] 장학금 포기 확인서 부분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 유형) 포기 확인서>

'26년 1학기					'26년 2학기					관련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포기 확인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포기 확인서					p.43
장학 정보	최초 선발학기	년 학기	총 수혜 횟수		장학 정보	포기 희망학기	년도 학기	유형	신규 또는 계속	
학생 정보	대학명	한국장학재단	학과	건축학과	학생 정보	대학명	한국장학재단	학과	건축학과	
	성명	홍길동	수혜금액	3,288,888 또는 해당없음		성명	홍길동	수혜금액	3,288,888 또는 해당없음	
포기 사유	학년	4학년	고액 번호	223456	포기 사유	학년	4학년	고액 번호	223456	
	연락처 010-0000-0000					연락처 010-0000-0000				
본인은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사업에 장학생으로 선발 되었으나, [포 기 사 유(필수 기재사항)](으)로 인하여 20 학년 학기 장학생 자격을 포기합니다. 이에 따라, 포기 학기에 수혜한 장학금은 즉시 전액 반환하며 포기 이전 학기에 수혜한 장학금에 대해서는 의무재직 이행 또는 장학금 반환하겠습니다. <유의사항> - 계속장학생의 경우, 포기확인서 제출 시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추후 수혜를 원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신규장학생 선발 가능합니다. - 단, 기 수혜학기에 대한 의무재직을 완료해야 하며, 미완료 시에는 요건 재확인 기간 내에 수혜 장학금(의무재직 미이행분)을 반환(이행)할 경우 신규장학생 심사 진행 가능합니다. (포기 학기에 대해 수혜받은 장학금은 당해 학기 이내 반환 처리 완료 필요)					본인은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사업에 장학생으로 선발 되었으나, [포 기 사 유(필수 기재사항)](으)로 인하여 0000학년 0학기 장학생 자격을 포기합니다. 이에 따라, 포기 학기에 수혜한 장학금은 즉시 전액 반환 및 포기학기부터 장학생 자격 상실에 대하여 인지하였으며, 포기 이전 학기에 수혜한 장학금에 대해서는 의무재직 이행 또는 장학금 반환하겠습니다. <유의사항> - 포기확인서 제출 시 신규 및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됩니다. ※ 고졸 후학습자의 경우 선발 횟수 최대 2회까지 가능하며, 해당 횟수가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학기별 신규장학생 심사 기준에 따라 선발 가능 - 단, 기 수혜학기에 대한 의무재직을 완료해야 하며, 미완료 시에는 요건 재확인 기간 내에 수혜 장학금(의무재직 미이행분)을 반환(이행)할 경우 신규장학생 심사 진행 가능합니다. (포기 학기에 대해 수혜받은 장학금은 당해 학기 이내 반환 처리 완료 필요)					

< '26년 2학기 업무처리기준 반영사항 상세 부분 >

<포기사유 부분>

본인은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 유형) 사업에 장학생으로 선발 되었으나, [포 기 사 유(필수 기재사항)](으)로 인하여 0000학년 0학기 장학생 자격을 포기합니다.

이에 따라, 포기 학기에 수혜한 장학금은 즉시 전액 반환 및 포기학기부터 장학생 자격 상실에 대하여 인지하였으며, 포기 이전 학기에 수혜한 장학금에 대해서는 의무재직 이행 또는 장학금 반환하겠습니다.

<유의사항>

- 포기확인서 제출 시 신규 및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됩니다.
- ※ 고졸 후학습자의 경우 선발 횟수 최대 2회까지 가능하며, 해당 횟수가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학기별 신규장학생 심사 기준에 따라 선발 가능
- 단, 기 수혜학기에 대한 의무재직을 완료해야 하며, 미완료 시에는 요건 재확인 기간 내에 수혜 장학금(의무재직 미이행분)을 반환(이행)할 경우 신규장학생 심사 진행 가능합니다.
- (포기 학기에 대해 수혜받은 장학금은 당해 학기 이내 반환 처리 완료 필요)

6-③ 재직의무 이행 제외 업종(변경사항 없음)

[변경사항 6-④] 심사 요건 재확인 심사 방안 부분

- < 인정 증빙서류 및 처리기준 > 표 - 재직기업 규모, 매출액

'26년 1학기	'26년 2학기	관련
< 재직기업규모 부분 > ■ 처리 기준 - 사업자규모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판단 - 한국평가데이터(주) 회신 상태값이 “판단제외”인 기업(금융업 및 보험업 등)의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 기업 매출액 자료를 검토하여(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합산 금액 등) 매출액 기준 400억원 이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3)인 경우 중소기업 이하 규모로 판단. 단, 취업제한사업자 여부, 취업제한업종여부, 휴폐업여부 등 검토 필요	< 재직기업규모 부분 > ■ 처리 기준 - 사업자규모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판단 - 신용정보회사 회신 상태값이 “판단제외”인 기업(금융업 및 보험업 등)의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 기업 매출액 자료를 검토하여(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합산 금액 등) 매출액 기준 400억원 이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3)인 경우 중소기업 이하 규모로 판단. 단, 취업제한사업자 여부, 취업제한업종여부, 휴폐업여부 등 검토 필요	p.45
< 매출액 > ■ 제출서류 -개인사업자의 매출액 및 거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서류 중 택1: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재무제표, 소득금액증명원	< 매출액 > ■ 제출서류 -개인사업자의 매출액 및 거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서류 중 택1: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재무제표, 소득금액증명원	p.47

[변경사항 6-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부분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26년 1학기	'26년 2학기	관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희망사다리 표유형 운영업무> 개인정보 항목 - [인적사항] 성명,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 (휴대폰번호·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집주소·우편주소), 계좌번호, 고객번호, 가족관계정보, 보호자정보, 사망정보, 재직정보, 병역정보, 장애 관련 정보, 사업자등록정보 등 <희망사다리 표유형 사후관리> 수집·이용목적 부분 희망사다리 표유형 사후관리 - 의무재직 심사 - 환수 및 보증보험 청구 등 개인정보 항목 부분 - [의무재직] 4대보험 가입정보(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계약서 등 재직 여부 확인 가능한 정보, 소득세 납부 관련 정보, 사업자등록정보, 매출액 및 영업 활동 관련 정보, 재단 통합신청 상 가족관계정보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희망사다리 표유형 운영업무> 개인정보 항목 - [인적사항] 성명,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 (휴대폰번호·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집주소·우편주소), 계좌번호, 고객번호, 가족관계정보, 보호자정보, 사망정보, 재직정보, 병역정보, 장애 관련 정보, 사업자등록정보,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 등 <희망사다리 표유형 사후관리> 수집·이용목적 부분 희망사다리 표유형 사후관리 - 의무재직 심사 - 환수 및 보증보험 청구 등 개인정보 항목 - [의무재직] 4대보험 가입정보(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계약서 등 재직 여부 확인 가능한 정보, 소득세 납부 관련 정보, 사업자등록정보, 매출액 및 영업 활동 관련 정보, 재단 통합신청 상 가족관계정보,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 등	p.48		
< 신 설 >	▶ 행정정보에 관한 수집·이용 동의 여부(필수) <table><tr><td>수집·이용 동의 여부</td><td>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td></tr></table>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p.49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에 관한 수집·이용 동의 여부(필수)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26년 1학기	'26년 2학기	관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필수) 제공받는 기관 국방부 ▶ 개인정보 제3자 조회 내역(필수) 제공받는 기관 고용노동부 국방부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필수) 제공받는 기관 국방부(병무청) ▶ 개인정보 제3자 조회 내역(필수) 제공받는 기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등) 국방부(병무청)	p.50, p.51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필수)			
조회하는 기관	조회목적	조회항목	보유·이용 기간
국방부 (병무청)	장학생 선발 요건 심사	병역정보 등	6개월
▶ 개인정보 제3자 조회 내역(필수)			
조회하는 기관	조회목적	조회항목	보유·이용 기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	의무종사 심사	고용정보(조회를 위한 제공 항목 : 주민등록번호, 고객번호, 성명, 학적 정보, 휴대전화번호) 등	6개월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참여대학	장학금 심사, 지급	e-MU(군전문학사) 학과의 군 장학생 여부 등	6개월
	반환(환수) 등 사후관리	학적정보(졸업, 자퇴, 제적 등), 학적 변동일자 등	6개월
신용정보회사 (NICE기업정보 등)	의무종사 심사 관련 기업정보 확인	기업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기업분류(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업종·업태, 매출액 등	6개월
대법원	가족기업 재직여부 확인	가족관계 등	6개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관련 정보 확인	이름, 고객번호, 학점은행제 학위종류, 학위 취득일자 등	6개월
국방부 (병무청)	장학생 선발 요건 심사	병역정보 등	6개월
※ 위의 개인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장학금 신청, 지급 및 사후관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3.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3.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일부 행정정보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인의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포함)을 위한 매학기 신청, 변동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처리 및 학자금지원 사후관리 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행정정보: 주민등록등(초)본(개명이력, 주소이력, 주민등록번호정정·변경이력 등), 가족관계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정보 등),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 국내거소사실증명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국민연금수급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해외이주신고증명서,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 일반·집합건축물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건축물, 집합건물), 토지(임야)대장,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소득금액증명, 휴·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출입국정보, 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근로자개인별월평균보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건설기계등록원부(갑), 화재증명원, 임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등
- 행정정보 이용의 목적 및 이용범위:
-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장학금 환수 등 사후관리,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 장학재단법 제50조의4(자료 요구 및 질문)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 이용기관의 명칭: 한국장학재단

행정정보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4.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에 관한 사항(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4.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에 관한 사항*(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공공 마이데이터)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정보주체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공요구권)에 근거하여 행정기관 등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려는 자에게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정보주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자에게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보주체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제도 이용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제공요구서'와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작성만으로 서류제출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일부 행정정보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은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정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 및 제공 요구가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가.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 이용목적	▶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통한 공공 마이데이터의 조회·수집·이용
보유 · 이용기간	▶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 · 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장학금 사후관리 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학자금지원 서비스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 서류를 귀하가 직접 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집·이용 항목]

 고유식별정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에 따라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 정보 활용 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CI값*
↳ 일반개인정보	* CI(Connecting Information)값: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에서 부여하는 개인 식별전산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나. 제공 (재단의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 데이터 보유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법원행정처 ▶ 본인확인기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근거한 본인확인기관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통한 공공 마이데이터의 조화·제공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연계정보(CI값)의 생성·조화·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장학금 사후관리 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학자금지원 서비스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 서류를 귀하가 직접 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에 따라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 정보 활용 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CI값*
일반개인정보	* CI(Connecting Information)값: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에서 부여하는 개인 식별전산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다.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제공 받는 것에 관한 사항)

본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제공받는 자	▶ 한국장학재단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학자금 지원 서비스를 위한 공공마이데이터 수집·이용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장학금 사후관리 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학자금지원 서비스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 서류를 귀하가 직접 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 정보주체에 관한 사항

- 성명 : (입력 신청 정보 자동 연계)
- 생년월일 : (입력 신청 정보 자동 연계)
- 연락처 : (입력 신청 정보 자동 연계)

■ 본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사항

- 이용기관 : 한국장학재단
- 묶음정보 서비스명 : 학자금 지원 서비스
- 묶음정보 이용목적 : 학자금 지원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본인정보 제공
- 제공 요청 유형 : 일회성 제공
-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 10년
- 정기적 제공 요청 상세내용
 - 주기 : 해당 없음
 - 종료시점 : 해당 없음

▶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요구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제공하신 본인정보는 제공요구 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종료일(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까지 본인정보 제공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장학금 사후관리 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단과 거래 중인 모든 학자금대출 전액 상환 및 서비스(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

■ 본인정보에 관한 사항

 고유식별정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에 따라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 정보 활용 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CI값*												
↳ 일반개인정보	* CI(Connecting Information)값: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에서 부여하는 개인 식별전산정보												
↳ 공공정보	▶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table><tr><th>보유기관 (보유기관명)</th><th>본인정보 명칭 (필요 행정정보명)</th><th>상세항목(항목값)</th></tr><tr><td>국민건강보험 공단</td><td>건강보험 자격확인서</td><td>(가입자_세대주정보) 성명, 주민_관리번호 (보험급여자정보) 성명, 주민_관리번호, 급여개시유효일</td></tr><tr><td>국민건강보험 공단</td><td>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td><td>(발급항목) 발급일자 (발급항목) 발급기관장 (확인청구자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_전체 (자격득실확인정보) 가입자구분, 사업자명칭,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td></tr><tr><td>국세청</td><td>사업자 등록증명</td><td>(과세유형) 과세유형 (납세자정보)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발급,</td></tr></table>	보유기관 (보유기관명)	본인정보 명칭 (필요 행정정보명)	상세항목(항목값)	국민건강보험 공단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가입자_세대주정보) 성명, 주민_관리번호 (보험급여자정보) 성명, 주민_관리번호, 급여개시유효일	국민건강보험 공단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발급항목) 발급일자 (발급항목) 발급기관장 (확인청구자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_전체 (자격득실확인정보) 가입자구분, 사업자명칭,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명	(과세유형) 과세유형 (납세자정보)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발급,
보유기관 (보유기관명)	본인정보 명칭 (필요 행정정보명)	상세항목(항목값)											
국민건강보험 공단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가입자_세대주정보) 성명, 주민_관리번호 (보험급여자정보) 성명, 주민_관리번호, 급여개시유효일											
국민건강보험 공단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발급항목) 발급일자 (발급항목) 발급기관장 (확인청구자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_전체 (자격득실확인정보) 가입자구분, 사업자명칭,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명	(과세유형) 과세유형 (납세자정보)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발급, 사업장소재지 (개업일자) 개업일자 (사업자등록일자) 사업자등록일자 (업태) 업태 (종목) 종목 (발급일자) 년, 월, 일 (공동사업자-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발급 (사업자상태 코드) 사업자상태 코드 (사업자상태) 사업자상태 (증명내용 업태종목내역) 업태, 종목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가입 자가입증명	(가입자명) 가입자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정보 (사업장명칭) 사업장명칭 (최종취득일자) 최종취득일자 (최종상실일자) 최종상실일자 (발급일자) 발급일자
	법원행정처	가족관계증명 서(상세)	(특정등록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가족사항) 가족관계명, 기타_성명, 가족_성명, 가족_ 주민등록번호
			「전자정부법」제43조의2제1항 및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 시」 제24조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 요구합니다. (예(제공 요구합니다) ☐ 아니오(제공 요구하지 않습니다) ☐ 본인 행정정보 보유기관 귀하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여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재단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시겠습니까? ☐ 요구함 ☐ 요구하지 않음		
※ 본 동의 이후 동일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기관 및 데이터 보유 정부·공공기관의 이용제한 또는 전산장애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 유의사항: 정보주체가 위 사항에 대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정보 제공 목적에 따른 처리를 위해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⑥-⑥ 중소기업 확인서류 견본(변경사항 없음)

⑥-⑦ 중견기업 확인서류 견본(변경사항 없음)

⑥-⑧ 근로내용 확인서(변경사항 없음)

⑥-⑨ 중소기업 관련 법조문 부분(법 시행일자 최신화)

'26년 1학기	'26년 2학기	관련
[중소기업기본법(시행 2024. 8. 28.)] 동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중소기업기본법(시행 2026. 7. 1.)] 동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p.60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5. 10. 1.) 동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좌동	p.61

< '26년 2학기 업무처리기준 반영사항 상세 부분 >

[중소기업기본법(시행 2026. 7. 1.)]

※ 법 제2조 내용 변경사항 없으며, 법령 시행일자만 변경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20.>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